

권을 제한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주한미군이 이들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상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 대신에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이 사유재산 소유지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은 대신해서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 미군 기지가 사유재산인 경우 한국정부는 징발법에 따라 이 토지를 징발하고 보상해 주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의 미군기지가 국유지인 만큼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군측에 공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국유지 공여라도 공여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또 시설과 구역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와 개인사유지의 경우에는 공용수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의 사유지 토지 징발은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가난한 소유자의 토지를 싼 보상료로 징발하여 부유한 국가의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은 일본과 필리핀처럼 시설과 구역의 무상공여에서 임대계약으로의 기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협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필리핀에서는 1947년 협정 제29조는 임대기간 1999년 명문화하고, 그후 1966년 교환각서는 25년으로 수정하였다.

‘미-일 SOFA’(1960년) 제28조도 상기 ‘미-일 안보조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10년마다 미군주둔기지와 시설을 갱신·재검토하는 것이 된다. 그때마다 그 동안 접수국의 달라진 상황과 이해를 갱신 계약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4)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제4조)

토지의 반환은 온전한 상태로 또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

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환경오염이 심하다던가 매향리처럼 폭격 장소로 사용된 기지의 경우에는 반환 받아도 토지로 사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통일후 독일은 소련으로부터의 일부기지를 반환 받았으나, 오염이 심해 활용이 심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최근 필리핀 미군기지도 반환 받은 후에 심각한 오염문제로 미-필리핀간에 보상문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제4조 제1항은 미군측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제시켜주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제4조 제2항은 대한민국정부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과 관련, 합중국 당국에 대한 보상 의무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산출·계량하기가 복잡하며,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쌍방간에 상호면제를 규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와 관련하여 그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최근 1996년 녹색연합에 의해 조사된 “미군 기지 환경조사보고서”에서도 환경오염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독일보충협정’ 제53조 문1, 3항에서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엄격한 독일법이나 NATO 회원국법의 적용이 된다. 따라서 독일 국내환경법이 미군기지에 적용될 수가 있다. 또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국내법이 해외의 대사관에는 적용되어도 미군기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5) 시설과 구역 반환 절차상의 문제

기지를 반환 받는 절차도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행협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합의가 서립되지 않으면 반환은 불가능해진다. 반환여부는 미군당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또 ‘한-미 SOFA’ 제2조 제3항은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여, 합중국에 일단 제공된 시설과 구역은 그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반환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러한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서의 주체가 문제가 된다.

외무부측 견해에 의하면, 합중국측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제공국인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그 사용의 필요성 여부를 사용국인 미국측의 결정에 일임한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은 가급적 반환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검토하여 시설과 구역 사용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상 이러한 의무부과는 강제적이 아니며, 그 반환 여부가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리 SOFA가 주둔군의 역할 및 임무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본취지를 인정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감정상 합중국 당국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91년 ‘한-미 SOFA’ 개정양해사항 제2조 제1항 (나) 및 제3항에서 상기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기는 했으나, 상기 필요성 판단문제에 있어서 미국측의 선의에 의존하는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 규정에는 어느 쪽이 시설과 구역을 계속 사용하는 필요성을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다. 외무부에서는 제2조 제3항의 문리해석상 미군

측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영토고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 유무는 주둔군대 당국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군기지가 이전할 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미-일 SOFA’의 경우,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agreed through the Joint Community)라는 구절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협정 제2조 제3항과 동일하다. 따라서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미-일 SOFA’는 이러한 반환의 전제조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공여된 시설과 구역이 협정의 목적 수행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어 좀더 합리적이다.

‘NATO SOFA’도 “연합군사령부의 사용을 위하여 접수국이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건물 및 고정시설로서 동 사령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접수국에 반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도 “...그 이외에도 군대 및 군속은 독일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들의 소요량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수한 협정에 대하여 구매됨이 없이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군대 및 군속의 수요를 충족할 다른 시설이 대치된 때에는 그 시설을 독일당국에 대하여 사전통고를 행한 후에 지체없이 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 ‘독일보충협정’은 “전기의 규정에 구매됨이 없이 독일당국이 공동방위임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독일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시설과 사용을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제국의 협정들도 ‘한-미 SOFA’처럼 시설 및 구역의 필요성 판단여부는 파견국가에 있음은 유사하다. 그러나 반환하는 데 전제조건이 없고 즉시 반환하며, 접수국의 입장을 비교적 많이 고려한다는 점이 ‘한-미 SOFA’보다 좀더 진일보한 면이다.

그리고 시설과 구역의 일시적 불사용 및 잠정적 반환과 관련하여, ‘한-

미 SOFA'는 잠정적 반환요건으로 시설과 구역의 일시적 불사용 사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에의 통고 그리고 합동위원회 합의를 요건으로 명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 SOFA'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상기 잠정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6) 시설과 구역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제3조)

기지사용의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미군의 기지사용은 미군주둔의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다. 따라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나 활동범위를 확정하기 힘들고, 또한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한 통제, 주한미군의 보유무기 여부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측에 없고 미국측에 일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에 의하면, "당사국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로 되어 있다. 이것은 미군의 활동범위가 한반도지역을 넘어 태평양이 된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역지 수단을 넘어서 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Pax-Americana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럴 경우 주한미군 및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측의 통제력은 상당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하여, 평상시에 미국은 한국의 재제없이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한국과의 협의없이도 군사훈련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한국측의 동의없이 어떠한 무기도 반입·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판단에 입각할 때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면,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핵무기의 보유 여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핵무기의 보유사실은 외부로부터의 무력침략만큼이나 위협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이 한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군당국의 사용결정권하에 있다면 한국민의 의사보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한-미 SOFA'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전도된 조항을 보게 된다. 즉 '한-미 SOFA' 제3조 제1항을 보면,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군기지의 보안을 위한 조치를 미군당국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미군의 군사행동이나 핵무기 등 보유에 대해서 규율을 할 수 있는 조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SOFA' 기타 부속문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한-미 SOFA'는 보안조치(Security Measures)를 첫째 시설과 구역내에 있어서의 보안조치, 둘째 시설과 구역외에 있어서의 보안조치, 셋째 비상시 시설과 구역에 있어서의 보안조치로 구분하고 있다. '한-미 SOFA' P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정부는 시설과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내부조치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한편 협정은 "대한민국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합중국당국의 시설과 구역외의 보안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및 합중국당국의 시설과 구역외의 보안조치 등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다. 상기 시설과 구역내에 있어서의 보안조치는 자체적 성격상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영역에 이르는 지역의 ‘시설과 구역외에 있어서의 보안조치’까지 합중국당국에 인정한 것은 비록 그러한 인정이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라는 절차상의 제한에 구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상기 첫째와 둘째는 평시의 보안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셋째는 비상시 보안조치를 다룬다.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3조는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상시 합동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거처기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평시와는 달리 한국정부와의 협의 없이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보안조치를 행할 권한을 합중국당국에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 비상시인지 또는 누가 판단하는 지가 문제이므로 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일 SOFA’ 교환각서(1960년 1월 19일)나 ‘미-필리핀 M.O.A.’(1983년 6월 1일)의 경우는 ‘한-미 SOFA’와 대조적으로 미군기지내의 무기반입 및 군사활동에 대한 접수국의 통제권이 허용되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과의 M.O.A.(마닐라 말라카낭국에서 주미 필리핀대사와 주필리핀 미군대사가 서명한 Memorandum of Agreement/1983년 6월 1일)는 미군기지의 무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통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지의 작전상 사용과 관련하여 : “필리핀 주권의 범위내에서, 필리핀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그리고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에 따라 행해지는 군사작전 이외의 군사 전투작전을 위한 작전상의 기지 사용 또는 미

국정부에 의한 기지내 장거리 미사일 설치, 필리핀내 군대를 포함한 미합중국 군사작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1979년의 개정 군사기지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리핀 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기지내의 출입과 정보와 관련하여 : “미국정부는, 상당한 기간내에 필리핀내 상주 미군의 현재수준과 장비 및 무기체제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필리핀정부에 대하여 필리핀내 상주미군의 여하한 주요변화나 장비 및 무기체제상의 변화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미-일 안보조약’의 경우 “조약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또 일본의 안전 또는 극도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나 한쪽 조약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한다”고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SOFA’ 교환각서(1960년 1월 19일)에서 “일본의 안전과 극동평화·안전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의 주요한 변경 및 일본 국내의 시설, 구역의 기지화는 일본정부와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협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주둔 미군은 일본정부의 동의없이 핵무기를 갖추질 못하며, 일본이 반대하면 작전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출동할 수 없다고 한다.

‘독일보충협정’(1993년 3월 18일 개정) 제53조에서는 1문단은 “군대 또는 군속은 그의 배타적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기지내에서 그의 방위책임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협정이나 다른 국제협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시설과 사용에는 독일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비록 미국시설이나 구역내에서도 다른 협정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독일국내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또 제53조 제3문(신설)에서는 “연방에 주둔하는 군대에 의해 훈련장소의 사용은 권한 있는 독일 당국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7)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의 평가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1990년 6월에 상기 각서를 통해 1996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전비용문제로 기지 이전은 난항에 빠졌다. 이 합의각서는 방침규정이며, 위반시에 이것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양쪽 정부는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다. 더구나 기지를 포함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이전을 포함한 반환문제의 결정권을 미군당국에 부여하고 있는 '한-미 SOFA'는 미국의 재량권을 넓혀 주고 있다. 더구나 상기 각서에서 "기지 이전은 1996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의 규모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도 미군당국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향후 기지각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기지 이전 일정을 넘기는 경우에는 임대기지로 성격 전환을 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게 하는 방법도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려고 했을 당시에, 평택시민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향후 미군측도 한국의 좁은 국토를 충분히 감안하여 기지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한국정부도 '미군기지주변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주변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과도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년)

문제는 이러한 상기 기지의 무상사용에 그치지 않고 주둔비용을 방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조차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1990년에 6월 약속한 것이다. SOFA 제5조 1하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는 합중국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미군당국에 직접·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1987년 당시 19억 6백만 달러(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

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이하 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SOFA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제1조), "대한민국은 매 회계연도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제2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한-미 SOFA' 제5조 제1항에 모순되며, '한-미 SOFA'의 개악이다.

이 개악된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비용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조차 방위비분담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미 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평가하고 있다.

향후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역할의 변화이다. 주한미군이 과거 냉전시 대와는 달리 순수한 한국방위만의 이해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위해 주둔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탈냉전 후 주요한 세계무기시장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는 미국군수재벌의 압력으로 미국이 결코 물러서기 어려운 시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북한 핵긴장분위기를 이용하여 한국에 판매를 강요했고, 게다가 낡은 무기조차 한국에 처분하곤 했다. 둘째, 방위비 산정은 주둔국의 구체적 경제력을 감안해야 한다. 경제력이 한국의 16배가 큰 일본, 독일과 단순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주둔 방위비요구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이 1991년에 자국의 국방비는 감축하면서 그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셋째,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한-미 SOFA'로 그 동안 한국인은 민·형사상 중대한 인권침해 및 재산권침해를 감수해온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로 인해 주한미군은 형사문제, 민사청구, 노무, 조세·관세·통관, 시설과 구역사용에서 지나친 특혜를 입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을 '한-미 SOFA'의 개정, 무역역조, 경수로지원 등 전반적인 한미 관계와 연계하면서 한국정부가 사실상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는 부동산 무상지원을 비롯, 카투사 등 각종 인력지원비, 면세혜택 등 제반 간접지원경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방위비분담금의 산출방식을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위비 특별협정에서는 '독일보충협정' 제63조의 같이 한미 양 정부의 부담경비를 세밀히 구분, 규정하는 것이 미국의 자의적 무리한 요구를 차단시 국회비준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만 근거를 두고 국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지원은 국내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종합하면 방위비 부담은 분담국의 능력과 수혜정도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의 GNP와 일본 및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또 탈냉전 후 한반도에 미군의 전쟁억지능력의 감소라는 구체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방위비분담액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형사관할권관련 조항

상기 1967년 '한-미 SOFA'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군지위에 대한 '한-미 SOFA'가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런데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개정하지 않은 채,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을 폐기하고 새로운 합의 양해사항으로 단일화했다. 또 그 동안 밀수의 온상으로 말썽을 부린 미군군사 우체국에 대해 "본 협정 제9조에 관련 합중국 주둔군 군사우체국 경로 우송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양해사항은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의 폐지, 제업

하의 미국의 전속적 재판권의 양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자의 확대, 대한민국 제1차적 관할권의 확대, 대한민국 예비수사권의 인정 등 개선점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합의의사록을 그대로 둔 것은 행정협정이 아직도 많은 불평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 이하 개정 양해사항(1991. 2. 1) 후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지적해보고자 한다.

가장 문제의 조항은 본 협정 제22조의 형사관할권 행사이다.

1) 형사관할범위의 인적 적용범위의 지나친 확대

본 협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미군이 관할권을 미치는 범위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SOFA는 너무 확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행 SOFA의 '가족'(본 협정 제1조 (다))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군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NATO SOFA'는 "배우자와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에 국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기타친척"은 제외하고 있고, 중국은 "근친"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행 SOFA는 가족의 범위에 "기타 친척"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친척의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생계비 산출의 근거도 없어 남용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청계약자는 원칙적으로 SOFA의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둔군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SOFA의 단서규정에 입각해 그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한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NATO SOFA'에는 없는 형사절차상 특권이다.

더욱이 1960년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의사록이 평화시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적 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국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한 미군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측에 제1차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에게 재판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주한미군당국이나 한국이 군속과 그 가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미군 군속이나 그 가족은 본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나 과연 얼마나 이송이 될까 의심스럽다. 따라서 한국이 제1차적 권리가 있는 경우에 포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판권을 행사해야만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주권이 보호될 것이다.

2) 미군당국 요청시 재판권 포기문제

형사관할권은 미국과 한국의 법령의 차이로 인하여 한-미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전속관할권과 한국과 미국이 다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관할권으로 분류된다. 본문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전속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이 경합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경합적 관할권 조항 제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1)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 ①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 ②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2)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행사한다.

- (3)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해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

문제는 부속문서에 있다. 제1차적 권리의 포기문제에 있어 협정 본문에서는 포기요청이 있으면 “호의적”고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교환서한에서는 한국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미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협정발효와 동시에 이 제1차적 권리를 미국에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살인, 강도·강간죄, 전기 각 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등에만 한정하고, 가장 빈번한 “폭행죄”와 “교통사범” 등이 예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빈번한 “폭행죄”와 “교통사범”같은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시 응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국민의 권리보호에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1991년 개정 양해사항은 중요한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것이 확대의 의사인지 어떤지는 시행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이러한 재판권행사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로 한국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일이 드물었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발생한 SOFA 관련사건 761건 중에 미군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2.8%인 16건에 불과하다. 이것은 1995년의 5.9%, 1996년의 3.4%, 1997년의 5.7%, 1998년의 3.0%보다도 더 저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양해사항으로 한국측의 재판권행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범죄발생을 통고받거나 알게된 후 “미국측에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고할 때”에만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동포기조항”의 내용을 포함한 부속문서 교환서한이 폐기된 것은 개선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 미군범죄는 한국정부가 재판권행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재판권은 자동적으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되어있었던 것을 미국측이 한국측에 관할권행사 포기요청을 하더라도 한국이 수락하지 않는 한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바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제1차적 재판권행사를 제한하는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본 협정 제22조 3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은 미군당국의 질서와 규율유지의 주된 책임을 인정, 미군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3) “공무”의 개념 확대 및 공무판단주체 문제

현행 협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 본 협정 제22조 제3항 b에서 규정된 “공무집행중의 범죄”나 아니냐에 관한 것이다.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집행중이냐 아니냐는 미군당국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로 결정된다. 또 제22조 합의의사록 제3항 (가)에서, “공무라 함은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1991년 개정양해사항(제3항 (가)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그의 “공무” 밖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어 공무집행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공무집행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당국자는 장성급장교야 하며, 수정이 합의되지 않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공무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권이 종전의 “검찰총장”으로 한정된 것을 “일반검사”로 확대한 것은 개선이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는 “공무”의 범위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의 ‘판단주체’문제이다. 첫째는 “공

무”의 개념결정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이 합의의사록에 결여되어 있어 주관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통 “공무”란 일방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고용원이 그의 직무상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람, 물건에 대한 집행은 물론 단순한 내부의 사무처리도 포함된다. 이는 직무집행시부터 종료시까지 생기는 모든 행위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이 합의의사록에 결여된 데 연유한다. 즉, 공무집행중의 의미란 공무의 근무시간중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휴식 시간중이라도 공무의 계속으로 간주되지만, 이렇게 해석한 판례가 없지 않으나 오늘날 학설, 입법례 및 판례는 공무집행의 과정이란 의미로 협의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94년 10월 미군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의 경우에도 미군당국은 공무의 개념을 매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 한국 재판권 복종을 거부한바 있다. 따라서 ‘공무’의 개념을 명백히 객관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무증명서 발급이 미군장성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은 미국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측의 재판권마저 유명무실해진다.

그런데 개정 양해사항은 이에 대해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

4) 수사권행사, 증거수집활동 및 판결집행의 제약

(1) 체포, 구금, 인도상의 제약

대한민국이 협정 대상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전속적 재판권이든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상관없이 무조건 즉시 미군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미군당국이 협정대상자를 체포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체포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군당국이 전속적,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제22조 제5항). 이는 한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평등조항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협정 제22조 제5항 C는 한국이 설사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피의자가 미군당국에 구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수사당국과 법원이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그 수사 및 증거수집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즉, 상기 제22조 제5항 C항은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 할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한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한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미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한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미군당국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구금에 있는 경우에는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한국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만약 미군피의자가 미군영내에 숨어버리는 경우에, 그의 신병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권행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의자 신병이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미군당국에 구금되어 있고, 또 구속수사를 전혀 하지 못해 수사당국은 피의자의 자유로운 접견기회 및 증거수집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군당국이 한국의 구금시설이 미군당국의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미군당국이 우리 수사당국과 법원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상기 제5항 C의 마지막 문단에서 피의자가 미군당국에 구금되어 있더라도 최종판결전에 한국측이 인도요청하며 미군당국이 호의적 고려를 하게 되어있어 신병인도에 문제없지 않느냐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현실성이 없다. 미군 피의자신병인도는 미군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지금까지 실제 관행을 보더라도 동 조 내용이 실천되지 않았다.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은 ‘미-일 SOFA’처럼 최소한 기소후에 행해질 것이 필요하다. 개정양해사항(제22조 제5항 (다) 2)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키 위해 한국측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미군 당국에 피의자 신병 인도하기 전에 제1차적 예비수사권을 확보했으나, 피의자신병인도를 일단 미군이 요청하면 즉시 넘겨주게 되어 있는

SOFA 규정 때문에 이 예비수사권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신병이 미군에 넘어 가 버리면 복잡한 협정절차를 밝아 피의자 심문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미군 관리의 입회하에 이루어진 심문조서만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다.

또 제22조 제5항 (다)에 관한 개정 양해사항에서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권 구금 또는 금족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 등은 한국사법부의 행형시설을 철저히 불신하고 있다.

(2) 판결집행의 제약

또 본 협정 제22조 제7항 b는 “한국은 본조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한국영역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미군당국이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미군당국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 미군당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면, 이 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구금시설을 불신하고 있으며, 우리 법원의 판결집행을 제약하며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개정 양해사항도 여전히 그러하다.

5) 한국경찰권행사의 제약 및 미군 경찰권의 남용

‘한-미 SOFA’ 제22조 제10항 그 자체는 경찰권행사에서 ‘NATO SOFA’ 및 ‘미-일 SOFA’와 유사하다. 문제는 동 부속합의서에서는 미군속이나 가족 등 민간인이 미군시설내에 있는 경우 이들을 한국사법당국에 즉시 넘겨주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후 미군시설에 도피하면 경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된다. 이것은 반면 미군 당국의 경찰권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법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미군의 경찰권이 시설이나 구역 밖에까지 남용될 우려가 있다(제22조 제10항 합의사록).

‘미-일 SOFA’ 제17조 10항의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은 당연히 일본 당국에 넘겨주게 되어 있다. 개정 양해사항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6) 미군 피의자에게 지나친 특혜부여

(1) 미군관리의 참가 없는 심문조서 능력부인

본 협정 제22조 제9항 g는 미군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한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 “미국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또 제22조 9항 g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변호인도 아닌 단순한 미군관리의 참여가 없는 한 미군에 대한 예비조사, 수사 또는 재판진행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정부대표의 입회 없는 미군의 재판진행은 인정될 수 없으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2) 재판거부권

또한 제22조 제9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 제22조 제9항이 미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a ~ g 항에 열거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 및 행정제도를 불신하는 지난친 권리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미군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는 권리, ② 미군 당국은 그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③ 미군당국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형벌의 집행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①의 한국법원의 재판거부권을 미군 피의자에게 부여한 것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하며, 내

국인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3) 상소권제한

제22조 제9항 합의의사록은, 미군 피고인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은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검찰의 상소권의 부당한 침해이므로 ‘NATO SOFA’에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 국외범 불처벌

또 제22조 제1항 b에 대한 합의의사록 2는 “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리 나라 형법규정 제5조(외국인 국외범)와 저촉된다. 즉, 한국형법 제5조는 다음과 같다 :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 적용된다. :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DVY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이러한 ‘한-미 SOFA’의 규정은 우리 사법제도와 행형에 대한 불신이며, 한국의 국가주권을 제약하게 된다.

7) 적대행위 발생시 또는 계엄령선포시 형사재판권 정지

본 협정 제22조 제11항은,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나마 본 협정상 한국의 형사재판권은 즉시 완전 중단되고 미군의 전속적 재판권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대행위”의 개념을 막연히 규정한 것은 한국의 재판권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적대행위”도 전면적인 전투발생에만 적용토록 한정·규정해야 할 것이다.

‘미-일 SOFA’ 제17조 제11항, ‘NATO SOFA’ 제15조 제2항도 60일전 사전통고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미-일 SOFA’ 제17조 제11항은 “상호방

위조약 제5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와 미국정부중의 어느 일방도 타방정부에 대하여 60일전의 사전통고에 의하여 본 조의 적용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가 행사되면 양 정부는 정지된 규정을 대신 할 적절한 규정을 합의하기 위하여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제22조 제1항은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방정부는 타방정부에 대한 통보로써, 상호합의하는 기간동안 본조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양국은 그 적용이 정지된 규정을 대체할 적절한 규정에 합의하기 위해 즉각 협의한다."라는 내용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양해사항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합의의사록에서, 본 협정 제22조 제1항 b 의 제1호의 한국의 전속관할권은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즉시 중단되며, 이 경우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합중국당국이 그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도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정 속에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규정이다. 미군이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할 때 그러한 상태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범죄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주권이 그만큼 제약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관한 개정양해사항에서는, 어느 국가도 계엄령 선포로 미군 군속 및 민간인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주둔군지위협정의 일반적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며 이들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행사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전면 중지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부분개선으로 부족하며, 계엄령선포와 관련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b 제1호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이 장기간 휴전으로 인한 전시인지 평시인지가 불분명하고 남북한의 특수한 대치상황에서는 한국민의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

지가 많다.

3. 민사청구권관련 조항

1) 배상금분담 규정의 불평등성

공무집행중의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미군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이 배상금 등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든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의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미군당국에 피해예방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아무리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 미국만이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금의 25%를 대한민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 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미군당국에서 대외청구법을 근거로 각종 청구권에 대한 배상을 할 때에는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배상금을 분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제2차 대전 직후와 같이 급격한 통화팽창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다한 배상금을 지불할 우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대한민국이 배상금의 25%를 분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상금을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하도록 한 것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일방당사국의 책임인 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공동책임이라 하더라도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할하지 않고 배상금

액을 균등히 분담하도록 한 것은 한미간의 역학관계를 비추어볼 때 미군측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

2) 민사소송절차규정의 미비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과 관계없는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가배상 심의회가 배상금액을 산정하여 미군당국에 통보해주는데 보통 미군당국은 통보받은 대한민국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을 거의 무시하고 다시 배상금액을 산정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내의 종합병원에서 발부 받은 후유장애진단서도 불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미군부대내 병원에서 다시 장애를 판정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수입은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과실은 높게 평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당국이 제시하는 보상금액은 대한민국 배상심의회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 특히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가해미군의 신병을 구속할 수 없고 미군 등을 수사할 때에는 미국정부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등 협정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가해미군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사건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해미군과 피해자가 사건경위 등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되고 사건의 실체와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서는 주로 가해미군의 진술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미국당국이 제시한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비공무중에 손해를 가한 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현행 협정에는 가해미군등에게 재판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가해미군 등의 재판정출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런 규정이 없다.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접수를 거부하였고 재판도중에 가해미군이 출국해버려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가해미군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강제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협정에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미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른 사유동산이 있을 때에는 미국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제23조 9항 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재산가치가 낮은 사유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사유동산중에서 미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은 강제집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비공무중에 손해를 가한 가해미군등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을 위한 절차가 현행 협정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공무중에 미군이나 고용원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현행 협정상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만족할만한 배상금을 지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배상금의 수령을 강요하고 배상금을 받지 않으려면 가해미군을 상대로 재판을 하라고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배상금이지만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군당국이 제시하는 배상금을 받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군당국이 범죄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 등을 들어 미군당국으로 하여금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였고 범죄예방 혹은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미군측에 촉구하지 않은 잘못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군당국이 채무보증적 지위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한 다음 불법행위자의 장래 봉급 및 본국소재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외에도 증거의 수집에 관해서 대한민국당국과 미국당국은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있어 실제 재판의 진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권포기조항의 문제

군대재산 혹은 정부재산에 대한 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 중이나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군대의 구성원의 공무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고의,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당사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1,400 달러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각기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액의 배상금에 대한 청구절차가 번거롭긴 해도 그렇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손해 배상금이 1,400 달러 이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면 소액배상사건도 여러 건이 모이면 금액이 적지 않고 청구권 포기규정이 피해예방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4) 교통사고피해자의 비용부담문제

공무집행 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이 확실한 반면에 배상심의회는 배상결정 혹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미군의 구성원이나 군속 범죄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교통사고와 폭력사건

인데 차량증가로 인하여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되어 왔다. 그런데 미군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배상법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장례비와 요양비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규정(제13조 제2항)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비용의 일부가 지급된 예가 없다. 설령 사망사고 또는 신호위반,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사처벌대상으로 정한 행위에 해당될 경우라도 공무집행중의 교통사고라면 미군운전자에 대해 대한민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치료비 등을 우선 마련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4. 노무관련 조항

1) 직접고용제의 문제

주둔군의 현지인 고용제도는 크게 직접고용제와 간접고용제로 나눌 수 있다. 직접고용제는 주둔군이 필요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인데 접수국이 고용원모집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모집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없으며 쟁의에 있어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접수국 정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개입하여 고용원의 이익을 향상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주둔군이 고용주로서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주둔군의 주권면제특권과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현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직접고용제를 채택한 협정은 '한-미 SOFA'를 비롯하여 '미-호주 SOFA' 등이 있다. 간접고용제는 접수국 정부 혹은 그 대리인이 사용자가 되어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둔국으로

하여금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간접고용제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접수국 정부 혹은 그 대리인이 되어 접수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주둔군에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국군의 특권이나 면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권익이 자국의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예로는 'NATO SOFA', '미-일 SOFA', '아이슬랜드 SOFA' 등이 있다. 현행 '한-미 SOFA'는 직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주한미군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권면제와 군사적인 특수성에 바탕을 둔 조항들이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제한을 가함으로써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 초청계약자에 대한 노무관계상의 특혜

초청계약자는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는 일을 하므로 군대나 군대의 구성원, 혹은 군속에 준하여 취급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노사관계에서도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에 따르고 노동쟁의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영리법인에 불과한 초청계약자에게 미군부대에 부여한 노무관계상의 특권을 동일하게 부여한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3)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허용문제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개념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가 어려워 주한미군에 광범위한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게 될 여지가 있다.

개정양해사항에서는 군사상 필요라는 것은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해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개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미군부대의 주둔과 활동이 원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노사관계의 분쟁은 통상 해결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위 양해사항 규정만으로는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해고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무조항은 '군사상 필요'라는 막연한 개념을 해고의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한국인 근로자들의 지위를 지극히 불안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비록 사전에 합동위원회에 회부되기는 하지만 합동위원회의 사전 합의가 해고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간에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비상사태시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한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부당 해고 구제절차나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부당 해고인 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미군부대내의 소청절차와 특별위원회의 해결절차 외에는 달리 공정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장기간의 쟁의행위 금지

협정규정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단체간의 쟁의는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㉞ 한국 노동청의 조정, ㉟ 합동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조정 및 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이 경과하여야만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청의 조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때로부터 7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길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로 제한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간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4조).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제63조) 위 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최장기간은 45일 이내이다. 따라서 노동청의 조정기간까지 고려하면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부터 70일의 쟁의행위금지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실질적으로 쟁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5) 군사작전방해시 단체행동 금지

고용원 또는 고용원 단체는 노동쟁의가 위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해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군대의 군사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4항 나).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단체행동이 군사작전에 심히 방해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결국 미군부대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방해시 단체행동의 금지규정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5. 환경 관련 조항

1)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의 면제

미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면, 또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본 협정 제4조 1항) 즉 ‘한-미 SOFA’는 미군당국이 한국정부에 시설과 구역 즉 기지를 반환할 경우 동 기지가 미군당국에 제공되었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대신으로 한국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 또한 면제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주한미군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다. 이 견해는 미군당국이 실제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학자의 다수도 상기 견해를 지지하는 것 같다.

상기 견해에 의할 경우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의 면제를 규정한 제4조 1항은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반환된 기지의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반환된 기지내의 토양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 정상적인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반환 받은 한국과 필리핀 및 독일내의 기지는 심하게 오염된 결과 토지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토지정화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협정 제4조의 취지는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1항), 한국정부 역시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미군당국이 행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에 대해 미국정부에게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2항). 오로지 미군당국의 관리 잘못으로 야기된 기지오염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기지내의 중대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권리남용법리'에 입각하여 미국정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도가 심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당국이 기지내의 토양에 대해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이나 미국정부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보상/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작성중인 '국가책임초안'(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에 따르면 중대한 환경오염피해행위는 국제법상의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에 해당되고(제19조 3항), 국제범죄에는 국제위법행위의 모든 법적 결과가 수반되며(제15조), 통상적인 국제위법행위보다 무거운 국가책임이 부과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제52조, 53조).

또한 본 협정 제4조 1항은 '기지자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이지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해 기지 주변의 환경 및 주민에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동 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은 결코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배출로 인한 주한미군기지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미군당국은 일반국제법상의 국가책임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배상도 가능하다.

2) 환경관련규정의 결여

'한-미 SOFA'에는 보건 및 위생조항(제26조)을 제외하고는 환경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기지에 대한 1차적 관리권을 미군당국에 부여한 제3조 1항과 기지반환시의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의 면제를 규정한 제4조 1항이 환경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관련규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를 방지할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이나 또는 기지내에서 한국의 환경법규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군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한국당국이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접수국은 외국주둔군기지에 대한 1차적인 관리권을 외국군당국에게 보장하기는 하나, 관련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국주둔군기지의 사용권 및 관리권을 규제할 수 있는 '잔존 영역주권(residual territorial sovereignty)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는 한국의 국가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1차적으로는 미군당국이 협정규정에 따른 제한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되 최종적으로는 한국당국이 영역주권에 입각하여 권리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권적 규제는 자국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잔존 영역주권에 입각하여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군당국이 1차적 관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환경오염피해를 초래할 경우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의회 일반회계감사국이 1991년 미하원에 제출한 비밀보고서에 밝혀진 바와 같이 미군당국은 해외군사기지에 대해 미국환경법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주민에 대한 오염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한적이 없으며, 미국법의 역외적용에 적극적인 미국의 국내법원조차 해외군사기지에 대해서는 미국환경법규의 역외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상당수의 미국환경법규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미국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미국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외국주둔군기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주

민이 직접 미국환경법상의 구제절차규정에 입각하여 미국연합법원에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요컨대 미국국내법원의 판례나 미군당국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미국 환경법규가 주한미군기지에 적용되는 것은 미군당국의 자발적 협조가 없는 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미군당국이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미국환경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대한 환경오염배출 행위에 대해 한국환경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3)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율의 불형평성

미군이나 고용원에 의한 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한미양당국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동 규정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방책임이거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측이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고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배상금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특히 동 규정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에 비추어볼 때 미군당국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4) 비공무집행중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상의 문제점

‘한-미 SOFA’에는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법정 출석에 대한 보장, 판결집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군당국은 원칙적으로 미군이나 고용원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해서는 아니되며,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내에 한국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를 사유동산이 있을 경우 미군당국은 한국법원의 요

청에 따라 동 재산이 한국당국에 인도되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민사청구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모집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본 협정 제23조 9항 가, 나, 다).

따라서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청구의 경우 한국당국이 사정하고 미군당국에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만족하면 문제가 없으나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진행과 판결집행 등에 있어 주둔군 및 기지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민사특별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비공무집행중의 행위로 야기된 민사청구를 접수한 한국법원의 관계직원이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에 재판서류가 송달되더라도 관련미군이나 고용원이 한국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적절히 진행할 수 가 없다. 설사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이 기지내에 사유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본국으로 이미 출국했을 경우 배상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불확실하다.

6.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관련 조항

1) 특혜의 인적범위에 관한 문제점

통관·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는 원칙적으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한해 부여된다. ‘한-미 SOFA’ 협정본문(이하 ‘본 협정’이라 약함)의 규정상 “미군군대의 구성원”(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이라 함은 한국영역내에 있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다만 미국대사관 직원으로서의 군인과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된다. “군속”(civilian component)이라 함은 미국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미국군대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복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초청계약자는 제외된다. 이

중국적자(한국, 미국)인 경우에는 미국국민으로 간주된다. “가족”이라 함은 ①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② 부모 및 21세이사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부양에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본협정 제1조)

한편 본협정 제15조상의 초청계약자 또는 본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에의 입국, 제9조 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의 용역이용, 제14조에 규정된 과세의 면제, 제19조에 규정된 군표의 사용, 고용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제20조에 규정된 군사우세국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일정한 특혜를 받고 있다(본협정 제15조 3항). 이처럼 ‘한-미 SOFA’에는 특혜대상자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타국의 SOFA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2) 출입국(본협정 제8조)에 관한 문제점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한국에 거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의 거류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27조, 34조). 그러나,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의 출입국은 일반외국인과 달리 상호방위라는 특수한 임무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들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한국법령(출입국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고,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나, 한국영역내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군속과 그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만 면제를 받고 여권 및 사증 등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본협정 제8조 2항).

여권 및 사증에 관한 한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은 출입국시 미군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와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한국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본협정 제8조 3항). 특히 한국내에서 군사경찰활동에 종사하는 미국군대의 법집행요원(미군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은 그 성명과 지위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중 한국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제8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1항)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은 출입국시와 한국체류시 미군당국이 발부한 “적절한 문서”(appropriate documentation)를 소지하여야 하는데(본협정 제8조 4항), 1967년 5월 25일 제8차 합동위원회는 적절한 문서를 “여권, 신분증 및 기타 한국당국의 신분확인에 충분한 사항이 기재된 미군당국이 발행한 문서”라고 합의한 바 있다.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 구성원의 가족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출입국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기 적절한 문서와 여권 사증을 출입국시 함께 소지하여야 할 것이나, 여권 및 사증에 이들의 신분이 증명되는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문서를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한-미 SOFA’에는 “적절한 문서”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한국 출입국관리법령의 적용배제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신분변경으로 상기 특혜항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한국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미군당국은 상기 인들의 신분변경시 한국당국에 통고하여야 하며, 한국당국이 퇴거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당사자를 퇴거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나 미국군대의 전구성원, 전군속 및 그들의 전가족에 대하여 국가안보등의 정당한 이유로 특정인의 퇴거를 요청하거나 추방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군당국은 해당자를 한국영역 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본협정 제8조 5항, 6항).

3) 통관과 관세(본협정 제9조)에 관한 문제점

(1) 통관절차,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한-미 SOFA'는 제9조 1항에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통관 및 관세에 관한 한국법령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2항과 3항에서 통관절차,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광범위하게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제는 물품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선 미국군대(동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가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비품은 한국내 반입이 허용되며,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기 비품, 수용품, 비품의 반입시에는 미국군대가 수입한다는 취지의 적절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이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이 부과되나 이에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 즉 ㉠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이 한국에 근무하기 위해 "최초로 도착한 때"(노두 they first arrive)나 이들의 가족이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해 "최초로 도착한 때" 사용을 위해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 가족의 "사용(private use)을 위해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사용을 위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reasonable quantities)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미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우송되는 것 등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9조에 대한 합의의사록에 의하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은 "합리적 양의 가구,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을 관세부과 없이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반입되는 물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2) 세관검사의 면제

물품수입의 경우 세관검사는 수입물품이 관련서류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를 확인하고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미 SOFA'는 미국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관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즉, ㉠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미국군대의 구성원, ㉡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봉인이 있고 미국 군사우편경로에 있는 제1종 서장, ㉢ 미국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검사가 면제된다. 따라서, 군속과 그 가족 및 미국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세관검사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데, 휴가명령에 따라 출입국하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해 세관검사의 면제를 제외한 것은 관세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한국 세관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이행협정에 따른다. 미국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는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군대(공인조달기관 및 비세출자금기관 포함)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당국이 화물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당국에 제공한다.

한편 '개정양해사항'(제9조 5항의 2)은 한국의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이 사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미국당국의 검사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수품이나 "비합리적 양"의 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심각히 의심된다는 한국 세관당국의 사전통보가 있으면 미국당국은 "불시의 검사"를 준비하며, 이 경우 미국당국의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한국 세관당국에 부여되어야 한다.

(3) 면세물품처분의 제한과 특권남용의 방지의무

관세면제를 받고 한국에 수입된 물품은 한국당국과 미국당국이 상호합

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여기서 처분이란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에 유상·무상의 처분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군대는 한국당국과 협력하여 통관과 관세에 관해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해 미국군대는 한국의 관세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 한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한국의 세관당국에 언제든지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의 관세당국은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국군대의 적절한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4) 비세출자금기관(본협정 제13조)에 관한 문제점

(1) 법규적용 및 과세부과의 면제

미국군대에 의해 설치되고 미국군대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비세출자금기관은 한국의 법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비세출자금기관이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이 사용하는 군판매점(PX),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미국 정부의 예산이 아닌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미국군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군대당국은 한국의 여하한 공적규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세출자금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미국군대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한국의 법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비세출자금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신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비세출자금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한국내에서의 구입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한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즉 한국내에서의 상품 등의 구입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과세권이 행사된다.

(2) 처분의 제한 및 정보의 제공

비세출자금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한미 양당국이 상호합의하는 조건에 따른 처분이외에는, 비세출자금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처분이 금지되는 물품은 비세출자금기관이 판매하는 “모든 물품”이다. 또한 비세출자금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 양정부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한국 조세당국에 한국의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의 제한

비세출자금기관은 원칙적으로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의 이용을 위해 설치된 것이나 합의의사록에서는 이밖에도 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미국정부의 공무원 및 직원, ② 미국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관 산하 주한 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③ 한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한국에서의 체류목적이 미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은 계약용역의 이행목적만을 위한 자, ④ 미국적십자사, 미국용역기구(U.S.O)와 같은 주로 미국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한국국민이 아닌 직원, ⑤ 前 각호에 지정된 자의 가족, ⑥ 한국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기타 개인과 기관 등에게도 이용을 확대 인정하고 있다.

5) 과세(본협정 제14조)에 관한 문제점

미국군대는 한국내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미국군대의 재산이라 함은 군사목적에 위해 들여온 모든 장비, 차량, 부품, 기구 또는 부수적 목적을 위한 기타 재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상호방위목적에 사용되는 이들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가 면제된다. 관세에 대해서는 본협정 제9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와 지방세를 의미한다. 조세와 유사한 과징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부담만을 의미하며, 급부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 사용료, 수수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이 미국군대 및 그 기관(비세출자금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의 조세(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등)가 면제된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득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에 주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시민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한국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한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한국내에서 투자 또는 사업을 행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 또는 한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관련 문제

1) 미군주둔과 여성의 문제점

한국을 해방시키고 북한군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장기주둔하게 된 미군은 지배국의 군대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패권주의적 행동을 보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1945년 9월 이후 1999년 10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군범죄는 약 10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간사건은 강도사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46년 3월, 미군

4명의 부녀자 윤간사건을 필두로, 1956년 14세 소녀 강간사건, 1967년 딸과 어머니를 함께 강간한 사건, 1971년 산에서 약초캐던 여인을 미군 8명이 윤간한 사건, 1986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마을에 들어와 임신 6개월이었던 여자를 5명의 미군이 윤간한 사건, 1996년 농아원생 추행 사건, 1997년 5월 여섯 살 소녀 성추행사건, 2000년 대구에서 무려 38명의 초등학교를 성추행한 미군속 헬로우 아저씨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폭력 범죄들이 계속되었다.

일반적으로 미군범죄의 일차적 대상자는 주로 여성이다. 이 여성들 중에서도 주한미군범죄의 상당한 피해자들은 기지촌 여성들이다. 기지촌여성들은 흉악한 상태로 살해되고 강간당하고 있으나 그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한국민의 관심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못할 뿐 아니라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미국의 공식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군에 의한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1992년 윤금이가 참혹하게 살해되었고 1995년 오키나와에서는 12세 여아가 집단 강간을 당했다. 이에 대한 미국은 태도는 매우 달랐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대통령, 주일미국대사, 그리고 미국사령관이 모두 사과했다.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키나와에 온 미국대통령은 다시 백배사죄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과는 끝내 들을 수 없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특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범행자체가 지닌 흉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SOFA에 따라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SOFA가 상호적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2) 군대 매매춘과 기지촌 여성의 문제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SOFA 협정에는 군대 매매춘과 기지촌의 문제가 간접적으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군대 매매춘은 기지촌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투력 보존이라는 명목으

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이러한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을 군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학자인 신시아 엔로는 자신의 책에서 "중앙 아메리카,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일본, 푸에르토리코, 미군 본토,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미 국방부는 마치 매매춘이 군사 작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군사화된 남성성은 정기적으로 성적 욕구의 해소(Sexual release)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군대 매매춘은 미국의 군사 활동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마치 군사 기지가 전함과 전투기를 위한 재충전과 수리를 위한 장소인 것처럼, 군인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미군 당국은 기지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미군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락한' 여성과 보호받아야 되는 '순결한'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낙인과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민족 개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 그리고 혼혈아동은 수치스러운 사실로 인식되고 왔으며,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와 인권 침해 사례들은 계속 은폐되어 왔던 것이다.

동두천은 미군 주둔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며, 따라서 미군 병사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육체적 노동을 요구받게 된다. 힘든 일과가 끝나면 사병들은 인근 지역의 기지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과 그 이후에 보상으로 따르는 성적 서비스와 술은 병사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기지촌으로 쏟아져 나오는 날이면 포주의 강제에 의해 기지촌 여성들은 밤이 새도록 매춘업소에서 일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미 국방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미군 기지 인근에 '유흥 지역'의 설립을 허가하여 미군들이 '휴식과 오락(R&R)'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기지촌마다 성병진료소와 낙검자 수용소를 세워서 기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낙검 여성에 대한 감금 및 치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미국은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하여 기지촌의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현재에도 기지촌 여성들은 2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도록 강제되고 있다. 한국에서 기지촌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미군 당국은 성병에 걸린 미군이 발생하면, 그 미군이 지목한 클럽의 기지촌 여성에 대하여 한국의 보건소에 통보하고, 연락을 받은 보건소는 그 여성을 찾아내어 검사하고 치료한다. 그리고 이 여성은 성병이 치료될 때까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당한다. 미군 당국은 최근까지 한국의 보건소에 성병 치료제를 지원해 왔다.

1999년 현재, 약 10,000명의 내국인 여성과 2,000명 가량의 이주민 여성이 기지촌의 매춘 업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미군기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기지촌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새움터의 실태조사에서, 조사원에 의해 직접 확인된 여성들의 숫자만 해도 한국 여성 1600명, 이주민 여성 900명이었다. 이 여성들 대다수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양을 요구받고 공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로 나왔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이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성폭행의 경험 등으로 인해서 성산업으로 유입되었다. 즉 군대 매매춘과 기지촌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산업화된 노동 시장'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이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기지촌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매매춘은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호 관계'이며,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 병사의 가장 주요한 기억'이라고

말한다.

기지촌 매춘 업소의 여성들은 이른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팔거나 매춘을 하게 된다. 또는, 1년의 주둔 기간 동안 미군과 계약을 맺고 동거를 하는 형태로 매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매매춘은 여성들에게 HIV/AIDS, 성병, 원치않는 임신, 낙태, 약물과 알콜에 대한 의존, 그리고 심리적인 질병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게다가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은 신체적,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폭력의 피해를 받는 경우에도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지촌에 들어오게 되는 여성들은,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뿌리깊은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서 기지촌 여성들은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 복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본격적으로 기지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지촌의 매춘 업소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연변 등으로부터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주민 여성들의 유입은 기지촌의 업주와 포주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의 군대 매매춘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이주민 여성 유입의 배경에는 미군 당국의 정책과 한국 정부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기지촌 여성의 약 절반은 이러한 이주민 여성들로 대체되어 있다. 즉 기지촌의 열악한 상황과 계속되는 인권 침해, 미군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 여성의 유입이 계속 감소하면서 기지촌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되자, 그 대안으로 이주민 여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난과 국제화되고 있는 성산업 메카 니즘 등으로 인해 많은 가난한 여성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성산

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필리핀 수빅만에서 미군 기지가 철수하게 되었으나, 그 지역의 매춘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혼혈아동의 문제점

미군과 한국 여성, 특히 기지촌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혼혈아동들이 태어나고 있다.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민족감정과 부계혈통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혼혈아동들은 심각한 차별을 당해 왔다. 이러한 혼혈아동들은 피부색과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소외를 당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이 아버지의 지원없이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혼혈아동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곤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혼혈아동의 중고등학교 중도 포기율이 非혼혈아동의 7배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혼혈아동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머니의 빈곤이 자녀들에게 악순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기지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혼혈아동들은 유해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기지촌은 성폭력 및 구타,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범지역이다. 업소에 일하러 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밤에 기지촌 지역을 서성이는 어린 아동들은 너무나 위험해 보인다.

최근 들어 기지촌의 외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혼혈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아동들의 어머니는 대부분이 불법체류 상태이거나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제4절 SOFA 분쟁 및 피해사례

1. 형사관련 사건

1) 찰스 유진 버처의 최모 양 외3명 성폭행 사건(1991년 1월 8일)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2리에서 찰스 유진 버처(24세, 미8군 수송부대 소속)은 집으로 가던 최모 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6월 3일까지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24일 징역 3역을 구형 받아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 보드 B 듀렐의 김기영씨 특수사건(1991년 2월 15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보드 B 듀렐 이병(21세, 미2사단 소속)은 서울 1마5035 김기영(37세)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파주군 소속 부대로 돌아오던 중 파주군 조리면 오산리 마을 앞길에서 차를 세우게 한 뒤 운전사 김기영의 차 열쇠를 빼앗으려다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김기영씨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히고 달아나 특수강도혐의를 적용,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 기소되었다.

3) 데릭 앤더슨의 한국유학생 강간, 살해사건(1991년 10월)

베를린 법원은 한국 여성을 강간, 살해한 미군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

고했다. 피고 데릭 앤더슨 하사(31세)는 베를린의 한 공원에서 음악학도인 한국인 유학생(32세)을 강간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망시켰다. 앤더슨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살인혐의로 미군법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미군법회의는 1991년 11월 사건과 관계없이 다른 범죄로 22년 징역을 언도한 바 있다.

4) 케니 아담스의 음주운전 교통사고(1991년 11월 27일)

황단보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혐의로 케니 아담스 중사(32세, 미군본부중대 소속)를 불구속 기소했다.

5) 두루스캇엠 외 5명의 윤천성, 윤석준씨 폭행사건(1992년 4월 4일)

윤천성씨(29세, 공사)는 술에 취한 미군 4명이 자신의 주택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저지하다가 미군에게 윤석준씨(윤천성씨의 조카)와 함께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10일 이상의 상해를 당하고 미군 또한 1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두루스캇엠 외5명은 폭력행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6) 푸리처드 존슨엘 외 5명의 김종화씨, 유완수씨 폭행사건(1992년 4월4일)

김종화씨는 팽성 안정리 소재 목마루 주점 앞길에서 푸리처드 존슨엘 일병과 스미스 리 엠 이병을 포함한 총 5명의 미군들에게 구타를 당하였다. 미군5명은 김종화씨가 구타당한 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말리는 유완수씨(28세, 지역 신문 기자) 역시 빈 맥주병을 들고 구타하여 4주간의 상해를 입혀 불구속 송치되었다.

7) 대니엘의 윤모씨 성폭행, 구타 사건(1995년 1월9일)

윤모씨(25세)는 1994년 4월초에 이태원 웬디스 햄버거 집에서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대니엘 (24세)에게 성폭행 및 지속적인 구타와 시달림을 당하여 대니엘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결과 대니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8) 호킨스 제임스 케이의 장모씨 강도 폭행사건(1995년 3월 25일)

호킨스 제임스 케어 병사(21세, 제2사단 3공병대대)는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노상에서 장모씨 (44세, 택시운전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 도망을 하였다. 케이는 뒤쫓는 장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이 구형되었으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되었다.

9) 마이클 노웰타티의 조모씨 성폭행, 구금사건(1995년 5월 22일)

의정부시 고산동 116 야산 공동묘지에서 마이클 노웰 이병(20세, 주한미육군 제2사단 소속)이 부대 근처 다이아몬드 클럽 조모씨 (20세 종업원)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여 구금되었다.

10) 데니스 잭슨의 임영철씨 폭행사건(1995년 10월 30일)

데니스 잭슨 상병(25세, 미2사단 소속)은 동두천시 보산동 직행버스 종점 앞 길에서 택시를 세우고 차량 점검 중이던 임영철씨(34세, 택시운전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다 지나던 다른 미군에 의해 붙잡혀서 미군헌병대에 넘겨졌다. 데니스 잭슨은 폭행해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1) 베넷 빌리 리의 천모씨 성폭행 사건(1995년 11월 29일)

대구시 남구 이천1동 모주점 화장실에서 베넷 빌리 리 이병(20세, 미제19지원단 소속)은 천모씨(48세)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1996년 5월 21일 베넷 빌리 리 이병은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형을 선고받아 6월 15일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98년 8월 25일 특사로 사면 조치되어 출소하였다.

12) 그린 스코트의 박순근씨 폭행사건(1995년 11월 29일)

그린 스코트 병장(24세, 미2사단 소속)은 박순근씨 (33세) 집에서 개가

짖자 박순근씨 집문을 걸어차고 달아나다가 뒤따라 나온 박순근씨를 폭행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13) 케네스 마클의 교도소 난동 사건(1996년 1월 16일)

윤금이씨 살해 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케네스 마클 케네스 이병(24세, 캠프 케이지61 정비대)과 미군 1명은 교도소 교사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공용물건 손상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4) 윌리엄스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 사건(1996년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7일)

윌리엄스는 1996년 6월부터 10월까지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모군(12세), 최모군(12세), 이모군(16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1996년 12월 23일 구속 기소되어, 1997년 7월 23일 1심에서 징역2년형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는 항소했으며 1997년 12월 16일 수원지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받지 않게 되었다.

15) 신원미상 미군속 자녀의 마약판매 사건(1997년 2월 5일)

주한미군 장병의 10대 자녀들이 여권과 신분증을 팔아 마리화나 등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5명은 본국으로 송환되고 나머지 5명은 80시간에 걸친 지역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16) 헨릭스 티모시 제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1998년 1월 16일)

헨릭스 티모시 제롬은 허주연씨의 명치를 때려 사망하게 한 후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방화하였다. 헨릭스 티모시 제롬은 3월 11일 서울지검으로 송치된 후 6월 20일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으며, 1998년 8월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1심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17) 테일 엘 허프의 군산 위조지폐 사건(1998년 1월 20일, 2월 5일, 2월 16일)

군산 미공군 기지 내 빌딩 앞 쓰레기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 위조지폐범 테일 엘 허프(24세, 미공군 제9전투비행단 통신대대 소속)는 미공군 당국으로부터 출금금지 및 근무금지 조치와 기지내 주거제한을 받았으며 전주지검은 기소할 방침이다.

2. 민사관련 사건

1) 헨터슨 티모시 E의 최종욱씨(44세, 버스운전기사) 외 1명은 헨터슨 티모시 E병장(미2사단 소속)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각각 1백6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 존슨 허먼 디의 박양식씨 폭행사건(1994년 12일)

존슨 허먼 디 중사(용산 제17육군항공단 소속)는 송탄시 신장동 소재 파파가방 가게에서 박양식(44세)가 판매한 가방의 상표가 틀리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박양식씨가 이를 거절하자 전치 2주 이상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은 발생 후 10개월이나 지나 92,190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3) 헌병 4명의 정양환씨 불법감금 사건(1994년 1월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길에서 정양환씨(47세,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는 미군헌병 4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3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정양환씨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정부가 정양환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불법감금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원고(정양환)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동 사건에서, 1995년 8월 9일 서울 지방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에 대해 와인더 등

미군 헌병들이 구속영장 없이 약 3시간 동안 불법 감금함으로써 원고(정양환)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 한국정부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인 미군 헌병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미헌병들의 세모녀 폭행사건(1994년 10월 25일)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이순영씨(40세)의 집을 방문하던 김영자씨(68세)는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무중인 미헌병들에게 부당 연행과 폭행을 당하였다. 그후 1995년 5월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1천8백만원의 배상액을 통보 받았다. 1996년 3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정부는 미군 헌병들에 의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프랜지서의 유영식 폭행사건(1995년 2월 13일)

이태원에서 미군 2명을 태우고 미8군으로 향하던 유형식씨(택시운전기사)는 미군 프랜지서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그후 치료비 명목으로 88만원을 받고 폭행군과 합의하였다.

6) 신원미상 미군 3명의 조기덕씨 교통사고(1995년 7월 4일)

조기덕씨 외 1명이 승용차를 몰고 동두천시 보산동 뉴코리아 앞을 지나다 술취한 미군 3명에게 폭행을 당하여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합의 요청에 따른 1백만원은 치료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액수여서 정식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7) 한국국민 토지에 매설된 주한미군 관리의 송유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1995년 12월 21일 선고)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공여한 토지에 미국 정부가 설치한 송유관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손기철)가 제

소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1995년 12월 21일, 한국정부는 동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8) 테일러 라이오넬 안토니오씨 이정숙씨 폭행사건 (1997년 5월 17일)

이정숙씨(46세)는 자신이 장기투숙 하던 동두천시 생연4동에 위치한 여인숙 여인숙에서 동거자 테일러 라이오넬 안토니오 병장(27세, 미2사단 소속)에게 폭행을 당해 전체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서울지법에서 약식을 받은 결과 벌금 1백만원에 처해졌다.

9) 케니스 싱글리터리 외 3명의 조춘식씨, 최동진씨 집단폭행 사건 (1998년 1월 3일)

케니스 싱글리터리 외3명의 주한미군은 조춘식씨(41세, 폐지 수거판매)와 최동진씨(45세, 폐지 수거판매)를 보며 욕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던 조춘식씨 일행을 집단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 후 미군들의 합의 요청에 따라 조춘식씨는 7백만원 수령 후 합의하였다.

3. 시설 및 구역 사건

1)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농민 사례(1993년)

1973년~1974년에 걸쳐 한국 정부는 농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정발 재산 매수통지서'를 발행, 장좌리 일대 40만 평의 땅을 당시 시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다. 이렇게 징발된 토지는 곧바로 미군에게 공여되었고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필사의 노력을 한 결과 1980년대부터는 출입증을 발부 받아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땅을 찾겠다는 염원으로 장좌리 주민들은 징발된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제출했으나 결론은 미군의 공여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다.

2)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 중단 사례(1995년)

국제 케미칼(대표: 이신연)은 피혁원단 가공공장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 의 건축허가를 받아 미2사단 인근에 1995년 3월 완공예정인 공장을 건축했다. 그러나 70% 이상의 공정인 상태에서 1992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축물 철거 지시가 내려와 공사는 중단되었다. 국방부의 철거시기는 공장 부지가 미군공여지임을 주장하는 미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제 케미칼측은 공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언제라도 미군이 철거요청을 하면 철수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장 건설을 진행하여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3) 동두천 쇠목마을 사례(1996년)

1996년 김병규(41세, 농업)씨는 주택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자신의 소유지(쇠목리 86번지)가 미군공여지임을 통보받고 그 부당함을 문제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6년 3월 15일 미군당국은 아무런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쇠목마을에 탱크 8대를 배치하였다. 이는 미8군 사격장을 새로 확장하기 위해 미군들이 땅 확보를 의미해서 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쇠목마을 주민들은 1996년 7월 10일 사용권부존 재확인 등 소송 제기를 하였고, 1997년 10월 1일 9차 재판의 권고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4) 파주시 진동면 일대의 미군 공여지 사례(1989년)

1973년 4월 26일 진동면 일대 2백16만8백여평이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군 사격장이 조성되었다. 그 후 일부 출입영농이 허가되었고 198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들의 등기가 회복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출입영농이 시작되었고 1996년 국방부, 관리부대인 25사단 등에 '입주 영농' 청원의 과정에서 진동면 일대가 1973년 미군에게 공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1997년 5월 육군 모부대로부터 진동면 일대 토지가 국방군사 사업용지로 편입되니 손실보상을 협의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

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여된 땅에 대해 미군에게 공여된 1973년부터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치만 평당 1천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낮은 가격에 대해 불만이 커졌으나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며 포기하고 매입에 응하는 주민들도 생겼다.

4. 출입국관련 사건

1) 미군들 불법체류자에 신분증 제공 사건(1995년 3월 4일 보도)

미군들이 신분증을 불법체류자에게 제공하여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출국심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2월 27일, 3월 1일 곤잘레스 지미(22세)와 안달 일루미나마(37세), 3월 4일 필리핀인 레오시오 빅토르(29세)등 3명이 같은 수법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2) 제임스 케이 리의 도주 사건(1995년 6월 9일)

한국인 여자를 흥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임스 케이 리(34세, 미8군 군속)가 미군당국과 검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도주했다.

3) 릴스톤 클러맨츠의 도주사건(1996년 1월 23일)

동거녀인 박모씨(25세)를 폭행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릴스톤 클러맨츠(47세, 전 미군속)는 사건의 파장을 우려한 미대사관측의 종용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

4) 신원미상 미헌병2명의 도주사건(1994년 7월)

1994년 5월 정양환씨를 불법 연행, 감금한 미헌병 2명이 소송이 제기된지 두달만에 미국으로 귀국했다.

5) 그레고리 도주 사건(1996년 3월 12일)

대국 남구 대명동 프란스호텔에서 정종자씨(23세)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그레고리 일병은 상관폭행죄로 이미 불명에 퇴직하여 3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5. 노무 관련 사건

1) 주한미군 근무 근로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1993년 5월 20일 선고)

한미행정협정 제15조 제1항에 초청계약자인 피고회사(엠코.에이.엔드.이.인크)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우용종 외 23인)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미지급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7조 제3항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군 군대의 고용원이 된 자는 물론 초청계약자의 고용원이 된 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한국법령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 미공군 클럽종업원 무더기 해고 물의(1995년 1월 24일)

경기도 송탄의 미국 공군부대는 적자를 이유로 그 동안 직영해온 부대 안 하사관 식당 '첼린저 클럽'의 운영권을 이모씨(60세)에게 넘겨 임대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클럽에서 종사해온 종업원 57명 가운데 근무기간이 짧거나 호봉이 낮은 종업원 24명을 부대 안의 다른 영업장으로 발령을 낸 반면, 경력이 많고 호봉이 높은 윤모씨(57세) 등 33명(남자 20명, 여자 13명)에 대해서 해고를 통보했다.

3) 한국구적을 가진 주한미군 소속 노무자의 법적 지위(1996년 1월 26일 선고)

주한미군 노무단에 소속된 한국인 고용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이귀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에 소속된 고용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

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6.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1) 대구 미군부대 전력 낭비 사건(1993년 7월 15일 보도)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캠프 워커)는 해가지지 않은 오후 7시부터 체육시설에 불을 밝히는 등 심한 전력낭비로 말성을 일으켰다.

2) 미군 결탁 관세포탈 사건 (1995년 11월 8일 보도)

등산장비 판매업을 하는 고수일씨(36세)는 친분이 있는 미공군 사병과 결탁하여 9천 2백달러 상당의 각종 등산장비를 들여와 55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3) 주한미군 교역처 직원의 관세법 위반 사건 (1995년 9월 23일 보도)

홍홍표씨(58세) 등 3명은 1억여원 상당의 미군 면세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켜 특수절도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4) 주한미군의 슬롯머신(1995년 3월 18일 보도)

미8군단 운영하는 클럽과 양식당 전국 1백10여개와 슬롯머신 6천여대, 골프장7개는 한달 평균 2백억원이 넘는 수입으로 94년 매출액이 2천9백여원이 되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슬롯머신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에서 세금 한푼 안내고 1천억원을 미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알려졌다.

5) 평택시, 하남시 소재 미군기지 수도세 체납 사건 (1995년 2월, 6월 보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K-55 미군기지는 수도요금 인상분 1억5천여만원을 1년이 넘도록 체납하여 열악한 시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6) 주한미군의 공공요금 이용 관행 (1996년 1월 14일)

주한미군은 전기세,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서 국군보다 30~45%에 이른 대폭적인 감면특혜를 받고 있어 주한미군의 공공요금 이용관행을 놓고 한·미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를 벌였다.

7) 고속도로 통행료 특혜 (19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차량의 경우 작전 차량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업무용 차량이기만 하면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이 되어 특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8) 군산공항 이용료 과다 요구 사건 (1998년 2월 27일)

군산 미공군 당국이 국내 민간 항공사의 공항이용료를 3배 이상 올리려 해 재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주민들의 철회 요구로 2002년까지 점진적인 인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7. 환경관련 사건

1) 평택의 K-55 미공군기지(1993년 3월)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6백여 톤의 각종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흘러보내 근처 개천의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다.

2) 반환된 3개 미군기지 오염 (1994년 3월)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지역(캠프 이즈벨,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 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3) 매향리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1998년 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 위원회'는 1998년 2월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 피해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1회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백만원씩 1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주민 대책위원회는 1995년 6월말에도 수원지검에 피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는데,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1995년 8월 5일 미공군 쿠니 사격장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에 대해 3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결정한 바 있다.

4) 포천군 문암마을 포탄 폭발 사고(1997년 7월 31일)

경기도 포천군 문암마을 김문배씨 대추밭에 포탄 3발이 떨어져 폭발했다. 이 사고로 안성용씨가 어깨부상을 당하였고 김문배씨 대추나무 30여 그루가 잘려 나갔으며 사슴 5마리가 유산을 하였다. 또한 80여가구 마을 주민들이 이사를 가고 어린이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5) 주한미군의 수락산 바위 낙서 사건(1998년 2월 보도)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히는 수락산 바위가 외정부 스탠리 부대 소속 주한미군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의미 없는 낙서들로 훼손되었다.

6) 동두천 미2사단 건축폐기물 부대 내 불법 매립 사건(1998년 2월 보도)

동두천 미2사단 내 케이시 부대 내에 영내 건축과정에서 나온 페아스 콘, 콘그리트 등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수천만 톤을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7) 미8군 메디슨 통신 부대 의왕시 백운산 기름 유출 사건 (1998년 5월 9일 보도)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소재한 미군기지내

경우 탱크를 연결하는 지하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그 동안 30여년동안 무공해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 계곡이 회복불능의 오염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환경전문가들은 사고지역의 토양층은 20~80cm 두께로 광범위하게 깊게 배여 있어 앞으로 100년이상이 경과해도 정상회복이 불가능한 최악의 산악 환경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8) 군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심각 (1998년 6월 2일자 보도)

군산 미군기지 주변의 소음측정 결과 주거지역은 83.6dB, 항공기 순간 최고 소음은 107.0dB로 청각장애는 물론 심장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수치임이 밝혀졌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하천과 습지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기지주변을 비롯한 기지내 모든 지역은 사용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보고서는 보고하고 있다.

8.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 범죄 사례

1) 최모양 외 3명 성폭행 사건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2리에서 찰스 유진 버처 상병(24세, 미8군 수송부대 소속)은 집으로 가던 최모양(9세, 초등학교 2년)을 지프에 태워 차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6월 3일까지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1년 12월 24일 징역 3년을 구형 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 윤금이씨 살해 사건

1992년 10월 28일 동두천 기지촌에서 윤금이씨가 미2사단에 근무하는 케네스 리 마클에게 살해되었다. 범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천안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3) 김국해씨 성폭행 사건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레벤호프'를 경영하고 있던 김미순(53)씨는 안경 코반이를 잃었다며 찾아온 미 2사단 소속 존 로저 살로이스(27) 병장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로저 병장은 '파리약 깡통'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구타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였다. 범인 로저 병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5년 1월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의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4) 미군 헌병대의 세 모녀 감금폭행 사건

1994년 10월 25일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외인주택)에서 한국인 세 모녀가 미군 헌병대에게 5시간 동안 불법 감금조사를 받고,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이순영(40)씨가 살고 있는 외인주택을 막내딸 이순희(30)씨와 함께 방문했던 김영자(68)씨가 외인주택 정문을 나서던 중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 헌병들에게 연행된 것이었다.

5) 원근자씨 폭행 사건

1995년 7월 7일 미군은 가게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한 후 원씨가 가게 옆에 딸린 부엌으로 들어가 컵을 찾자, 갑자기 검정 비닐에 싼 돌로 원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너무나 놀란 원씨가 얼떨결에 방 쪽으로 도망을 치자 뒤쫓아온 미군이 돌로 원씨의 얼굴과 오른쪽 턱 아래를 쳐서 원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미군은 원씨의 양쪽 주머니를 찢고 원화와 달리를 훔쳐 도망을 쳤다.

6) 천영숙씨 강간치상 사건

1995년 11월 29일 03시 50분 대구시 남구 이천동 소재 MVP주점 화장실에서 미군 이병 벤넷 빌리 워가 이 주점의 종업원인 천영숙씨를 강간하

려 했다. 천씨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범인은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을 선고받았고,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7) 에스터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1997년에 농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미군 윌리엄스가 농아원생들에게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윌리엄스 약 에스 일병은 1997년 7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윌리엄스는 항소하였고,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8) 강미희씨 살해사건

1996년 1월 18일 강씨는 동거하던 미군속 메킨리의 구타에 의해 살해당했다. 범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6년 9월 7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서문경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이기순씨가 숨겨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범인은 미 제2사단 유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경찰에 의해 9월 11일 검거되었다. 범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 이정숙씨 강도, 폭행사건

1997년 5월 17일 테일러 병장에 의해 강도, 폭행을 당했다. 상해죄로 기소된 테일러는 1997년 8월 30일 약식재판을 통하여 벌금 1백만원에 처해졌다.

11)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 사건

1997년 5월 31일 새벽 1시40분경 미군 차니 테리엘은 동두천시 광암동 한정옥(59)씨 집에 들어와 작은방에서 잠자던 한씨의 외손녀 이현주양의

팬티를 벗기고 성추행하였다.

12) 허주연씨 살해, 방화사건

1998년 1월 15일 오후 10시경 허주연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의정부의 JS 클럽에서 미군 헨릭스 티모시 제롬을 만났고 자신의 방으로 함께 갔다. 제롬은 3시 30분경 '오른쪽 팔꿈치로 허씨의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주연씨가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붙였다. 범인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13) 신차금씨 살해사건

1999년 1월 동두천 기지촌에서 신차금씨는 전깃줄에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 그녀의 방 벽에는 그녀의 립스틱으로 범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galhore(창녀)'라는 글씨가 쓰여있었다. 미군이 용의자였지만 끝내 범인을 밝힐 수 없었다.

14) 이정숙씨 의문사

1999년 9월에는 동두천 기지촌에서 이정숙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동거하던 미군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범인을 밝힐 수 없었다.

15) 김성희씨 살해사건

2000년 2월 서울의 이태원 기지촌에서는 김성희씨가 목뼈가 부러진 채 살해되었다. 범인은 메카시 상병으로 밝혀졌고 8년 선고를 받았다.

16) 서정만씨 살해사건

2000년 3월 11일에는 의정부시에서 68세의 서정만씨가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채 살해되었다. 미군이 용의자이지만 범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9. 기타 사건

1) 미해결처리 사건

(1) 찰스본드의 김광석씨 폭행 사건 (1988년 8월 3일)

김광석씨(경양식, 종업원)는 찰스본드(미해군 소속)에 의해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2) 신원미상 미군의 조경옥씨 폭행사건(1988년 9월 3일)

미군에 의해 조경옥씨(임산부)는 구타를 당하여 임신 중인 아이가 낙태되었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3) 부르스하레이다의 정관용씨 폭행치사 사건 (1989년 2월 10일)

미군 부르스하레이다는 정관용씨(농부)가 밭을 걸어온다고 번쩍 들어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 꽂아서 즉사시켰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4) 신원미상 미군의 박모씨 사망사건 (1990년 6월 28일)

박모씨(25세)는 일주일 전부터 가해자로 보이는 미군과 동두천 이화장 여관에서 투숙하다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5) 신원미상 미군들의 소요산 등산객 집단 폭해 사건(1991년 7월)

소요산 등산객을 미군들이 집단으로 폭행하였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6) 신원미상 미군 3명의 여종업원 폭행 사건 (1992년 7월)

여종업원을 미군 3명이 깨진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자궁을 찢어 내어낸 것으로 만들었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7) 신원미상 미군 탱크의 하회수 어린이 교통사고 (1993년 6월 29일)

하회수 어린이가 미군 탱크에 의한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으나 미해결 처리 되었다.

(8) 신원미상 미군의 두아들 살해사건 (1993년 7월 19일)

경기도 송탄에서 미군이 두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9) 신원미상 미군의 뺑소니 사건 (1993년 8월 4일)

서울 서대문에서 신원미상 미군인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으나 미해결처리 되었다.

2) 무협의 사건

(1) 신원미상 미군의 오희석씨 폭행 사건 (1988년 9월 24일)

미군이 오희석씨(택시 운전자)를 실신시키고 도주하다 추격하는 경찰과 주민에게 흥기를 휘둘렀으나 무협의로 풀려 나왔다.

(2) 신원미상 미군의 박경림씨, 박재광씨, 김성준씨 폭행 사건 (1993년 12월 25일)

박경림씨(36세, 대박스텐드빠 지배인), 박재광씨(대박스텐드빠 웨이타), 김성준씨(19세, 대박스텐드빠 웨이타)는 일을 마치고 조이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이 미군들과 말싸움이 벌어져 갑자기 패싸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미군들은 무협의로 풀려났다.

3) 형사처벌, 민사청구의 여부 또는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들

(1) 신원미상 미군의 박춘봉씨 사망 사건 (1987년 11월)

동두천시에 살고 있는 박춘봉씨(택시운전기사)는 미군에 의해 면도칼로

목이 잘린 채 사망하였다. 후에 가해 미군은 3년형을 복역했다고 하나 정확한 진상은 파악할 수 없다.

(2) 제임스 스텐의 정영재씨 의사 사건 (1989년 7월 23일)

미군 제임스 스텐이 정영재씨(자동차학원 교사)를 물 속에서 의사시켰다.

(3) 안토닉 로버트 외 5명의 김종규씨 외 6명 폭행 사건 (1991년 11월 20일)

안토닉 로버트 상병(22세, 부산 미7함대 소속) 등 해군병사 5명은 술에 취해 김종규씨(22세) 등 술집 종업원 4명을 폭행하여 전치 10일~3주간의 상처를 입히고 35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숴다. 또한 지나가던 손복영씨(35세)의 승용차를 부수고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이홍성씨(51세, 방범대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여분 가량 난동을 부려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4) 파렌트론디의 강대식씨 외 6명 폭행 사건 (1992년 11월 26일)

강대식씨(26세)는 친구 6명과 경기도 팽성읍 안정리 K-6 미군기지 정문 앞을 지나가다 파렌트론디 이병(23세, 제557헌병중대 소속)이 던진 술병에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5) 신원미상 미군 3명의 김태훈씨 집단폭행 사건 (1992년 11월 28일)

김태훈씨(37세, 택시운전기사)는 미군 3명에 의해 집단 폭행 당하고 전치 6주의 상해와 1백만원 가량의 차량 손실을 당하였다.

(6) 신원미상 미군의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1992년 11월 30일)

미군 대위의 무단승차를 거부한 모씨(택시운전기사)는 폭행을 당하였다.

(7) 신원미상 미군 3명의 김주영씨 폭행 사건 (1993년 3월 27일)

김주영씨(나이트클럽 종업원)는 일을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